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2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잔교·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가. 좁은 수로등의 지정·고시 근거 신설

개정안은 수로나 항로의 수심과 폭, 통항 선박의 길이·흘수, 항해자의 항행관습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좁은 수로나 항로를 지정·고시하고, 지정된 좁은 수로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서·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좁은 수로와 관련된 판례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따르면, 좁은 수로 해당 여부는 해당 수로의 지리적 조건(가항수역의 폭 등), 통항 선박의 종류와 크기 및 교통량, 해당 수역의 자연적 조건(조류의 속도와 세기, 조석의 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통상 수로 폭이 통항하는 선박 길이(L)의 16L 이내일 때 좁은 수로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수역이 좁은 수로인지 여부는 선박의 특성(길이, 폭, 흘수 등)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좁은 수로를 지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좁은 수로가 지정·고시되는 경우 이는 현행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수로등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준수사항의 전제가 되는데, 오히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사고 발생 방지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

가 있고,

현행법 제7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좁은 수로를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도 항행방법만 지키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로 선박사고의 위험을 제어할 수 있을지 여부 등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운항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개정안은 조타기 조작 및 항해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때 휴대전화 또는 그 밖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선원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상에서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음